래미안 라클래시 입주자 모집공고

Ⅰ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

1.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- 본 아파트는 2019년도 이후(최초 입주자모집승인 기준)에 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임.
  - 세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,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인천제외지역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 (공동주택만 해당하며,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임.
  - 본 아파트는 근린상업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임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임.
  -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 (공동주택만 해당하며,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임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임.
  -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 (공동주택만 해당하며,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임.
- 2019년도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 (공동주택만 해당하며,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임.
-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 (공동주택만 해당하며,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임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임.
  -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 (공동주택만 해당하며,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임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임.
  -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 (공동주택만 해당하며,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임.
-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임.
  -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주택 (공동주택만 해당하며,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임.
- 본 아파트는